



함께 만들어가는 구산동의내일!

2024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구산동 주민자치회

2024년도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보고서

2024년도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보고서 목차

인사말	02
1. 구산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04
2. 구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05
3. 구산동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06
4.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08
5. 구산동 주민자치회 회계현황	11
6. 2024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12
7. 구산동 주민총회 결과보고	23
8. 2024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활동사진	31

|별첨|

은평구 주민자치회 조례	40
구산동 운영세칙	48



2024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회장님 인사말

이상훈 구산동 주민자치회장

“함께 만들어 가는 구산동의 내일!”
구산동 주민자치회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구산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구산동 주민자치회는 ‘봉산을 들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어르신 반찬 만들기’, ‘도시농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주민 여러분과 자치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치회가 한 걸음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구산동의 더 밝은 미래를 꿈꿔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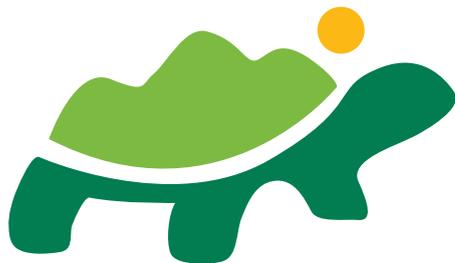
다가오는 2025년에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협력이 계속된다면, 구산동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 12.

구산동 주민자치회장

이상훈



2024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동장님 인사말

박재균 구산동장

구산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동장 박재균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니 구산동 주민자치회와 함께한 행사들로
가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대학교와 함께 협약을 맺어 진행했던 은평 1동-1 대학 사업들부터,
많은 주민이 함께 해주셨던 「제4회 구산동 주민총회」까지!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뜻깊은 변화를 만들고,
더 나은 구산동의 내일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정치는 지역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주민자치회는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모여 살기 좋은 구산동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구산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욱 살기 좋은 구산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구산동 주민자치회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2.

구산동장

박재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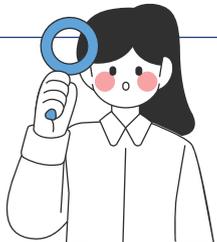
1. 구산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2024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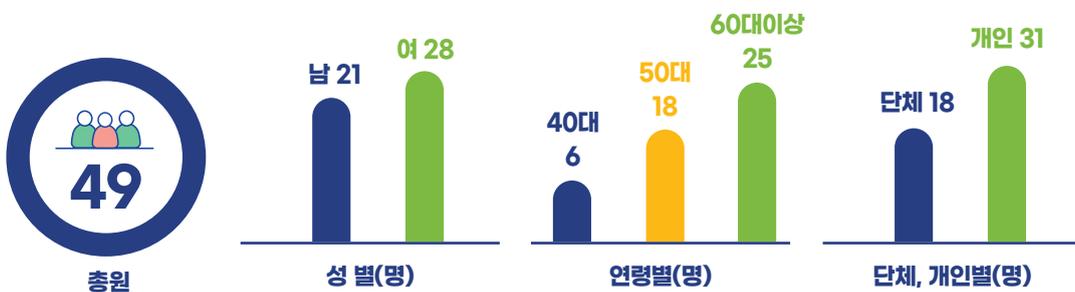
2. 구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구산동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문화를 통해 마을의 개선하고 싶은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 결정,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을 주민과 행정이 함께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 : 49명 (2024. 12. 01.기준)



● 주민자치회 임원진 현황 (2024. 12. 01.기준)

회장	부회장	감사	분과장	분과총무	사무국장	간사
이상훈	유해영	노성호 윤경석	한덕순, 정윤호 이영길, 탁은정	김경미, 채명화 최정숙, 박경숙	이경진	최윤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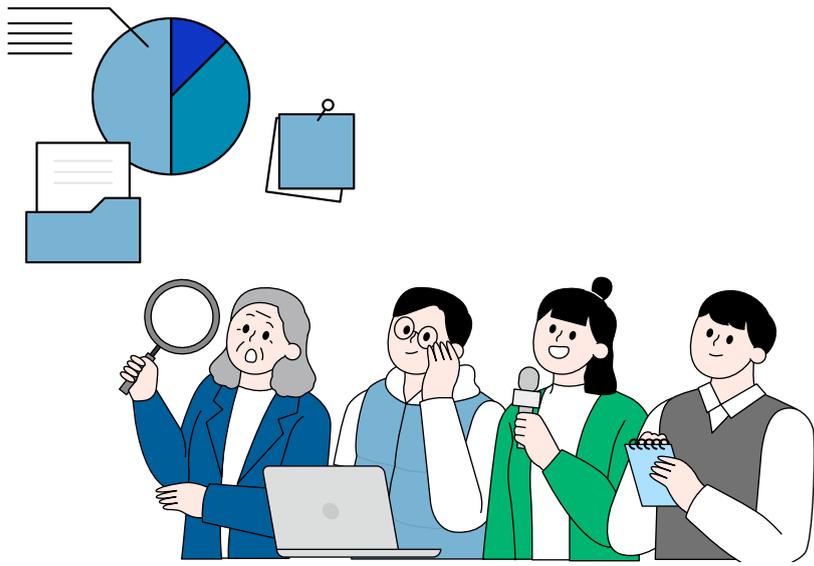
● 주민자치회 분과 현황 및 주요업무 (2024. 12. 01.기준)

분과명	주요업무	2024년 추진사업	사업비용	사업성과
자치회관운영 분과	자치회관 활성화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	1동1대학 도시농부-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 텃밭	14,000천원	1동1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농협대학교 내 텃밭에서 직접 친환경 먹거리를 재배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
환경미래 분과	마을의 쾌적한 환경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봉산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10,000천원	봉산에서 자연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며 아동들의 심신건강 발달을 도모
건강돌봄 분과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등 주민의 건강과 복지사업 추진	어르신들의 반찬만들기	10,000천원	독거 남성들이 스스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리 교육 실시
미래시민교육 분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교육사업 추진	청소년 동아리 모임활동 지원	6,000천원	구산동내 마을 의제밭굴 및 공론장 운영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 구성 및 활동

3. 구산동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시 기	운영내용	세부 운영 내용
2024. 1.	2023년 마무리 2024년 시작	- 2023년 사업정산 - 2023년도 구산동 주민자치회 정기감사 - 정기회의 - 분과 재구성
2024. 2.	2024년 사업계획	- 2023년도 참여예산 등 지역사업 지도·점검 - 2024년 주민자치회 상반기 운영예산 교부 - 2024년 사업계획 공유 및 논의
2024. 3.	마을돌아보기 주민의제 접수	- 분과별 마을돌아보기 - 주민의제 접수
2024. 4.	프로그램사업실행 운영세칙 개정 수국사 수국 식재행사	- 2024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사업 진행 시작 -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 봉산 수국사 힐링정원 조성 - 수국사 수국 식재
2024. 5.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공론장 개최 주민자치회 연합워크숍 동참여예산 주민제안 컨설팅	- 구산동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2025년 참여예산 구산동 1차 주민공론장 개최 - 2024년 주민자치회 연합워크숍 개최 - 2025년 동 참여예산 주민제안 컨설팅 개최
2024. 6.	2025년 의제 부서검토 2024년 주민자치회 지도점검 주민총회 슬로건 변경	- 2025년 발굴의제 협치담당관 제출(총 30건) - 2024년도 주민자치회 상반기 지도점검 진행(주민참여협치과) - 2024년 주민총회 슬로건 “함께 만들어 가는 구산동의 내일”
2024. 7.	주민총회 의제 확정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 2025년 의제 부서검토 결과 적정 11, 부적정 7, 조건부 12 - 주민총회 의제 확정 -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개최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1차회의 진행
2024. 8.	2024년 주민총회 사전투표	- 2025년 참여예산 구산동 2차 주민공론장 개최 - 주민총회 사전투표 진행 - 은평구 참여예산 주민총회 개최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2차회의 진행

2024. 9.	2024년 주민총회 개최 2025년 마을의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총회 사전투표 개표 - 제4회 구산동 주민총회 개최 - 2025년 마을의제 선정 (동특화, 환경2, 시설1, 프로그램4)
2024. 10.	은평1동1대학-어르신 힐링 캠퍼스 개최 연임위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1동1대학-어르신 힐링캠퍼스 개최 - 연임위원 확정 - 진관사 만발공양 행사 - 자매도시 장연면 농특산물 직거래 “절임배추”접수
2024. 11.	은평1동1대학 성과공유회 개최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제3기 주민자치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1동1대학 성과공유회 - 자매결연지 농특산물‘절임배추’직거래 행사개최 - 제3기 신규위원 모집 - 2024년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지도·점검
2024. 12.	제3기 신규위원 공개추첨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6일 : 제3기 신규위원 공개추첨식 - 12월 13일 : 은평구 주민자치회 합동 성과공유회 개최 - 12월 13일 : 구산동 주민자치회 송년회



4.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감사종류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 감사
감사대상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내용	1.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내역 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 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4.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점검
조치사항	1.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내역 - 분과사업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전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음 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 - 사무국회의록 미비 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 특이사항 없음 4.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점검 - 특이사항 없음
종합의견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감사 노성호, 회계감사 윤경석은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관련 전반사항을 점검표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하였으나 분과마다 올해 사업실행에만 열중하고 다양한 의제발굴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 회계지출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붙임. 1.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세부내용 1부. 끝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월 9일

제출자: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감사(노 성 호 (서명))

제출자: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회계감사(윤 경 석 (서명))

은평구청장 귀중

구산동 주민자치회 세부 감사보고

● 감사 개요

- **근 거**
 -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15조
 -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4조 4항
- **감사일시** : 2024년 1월 9일 17:00
- **감사장소** :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 **감사자** : 노성호 사업감사, 윤경석 회계감사



● 감사 내용

1.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내역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정기회의 (월1회, 매월 네번째 화요일)	양호
2	운영진회의 (월1회, 매월 세번째 화요일)	운영진들의 바쁜일정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워 단체톡으로 진행해야 한점이 아쉬움
3	분과회의(분과별 월1회)	미래시민교육분과 8,9,10,11월 회의 미진행
4	사무국회의, 민관협력회의 (필요시 상시 진행)	민관협력회의의 진행이 안되었음
5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동 마을축제와 병행하여 진행하다 보니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비중이 다소 적었음
6	주민총회 결과 정리와 주민공유	주민총회 결과보고 작성 후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7	자치회관 운영	캘리그래피, 사군자, 손뜨개, 통기타 종급반 등 프로그램 신설로 다양한 계층과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됨

2. 주민자치회 예결산 및 회계 처리과정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주민자치회 예산수립(세입과 세출)의 적정성 : 예산과목 준수 여부 및 집행의 적정성	양호
2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양호
3	예산편성시 모든 예산의 누락여부	해당사항 없음
4	주민자치회 명의의 전용통장 개설 및 사용 여부	통장 확인, 체크카드 확인
5	주민자치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6	주요 회계장부 비치 및 통장잔액 일치 여부	이상없음
7	수입원, 지출원 지정 여부, 신용보증보험 가입 여부	신용보증보험 가입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8	자치회관 수입 등 유료 프로그램의 수입 누락계상 여부, 영수증 발급의 적정성 확인	양호
9	지출서류(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증빙서류 적정하게 증빙되어 있음
10	예산의 허위성 지출 여부	해당사항 없음
11	소득세, 주민세의 원천징수 이행 여부	양호

3. 행정서류와 각종 문서, 장부 및 직인관리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정기회의, 분과회의, 운영진회의 회의록 비치	양호
2	주민자치회 위·해촉 사임 대장	양호
3	직인대장과 문서대장	양호
4	직인의 보관관리	양호
5	세무서 고유번호증 보관관리	양호
6	사업계획서 및 사업운영 필요서류	양호
7	연 1회 재물조사 실시 여부, 조사표 부착여부	조사표 부착 미비

4. 주민자치회 사업(주민세, 참여예산) 현황점검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가족다양성의 이해	세 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과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진행하여 만족도가 높았음
2	봉산을 들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 세대	2022년도에 이어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차기에는 다양한 숲의 모습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음
3	어르신들의 반찬 만들기	퇴직 후 남성 어르신들에게 요리교실을 통해 건강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드리는 기회를 제공 관내 공유주방이 없어 프로그램 진행 환경이 열악함
4	우리동네 워터파크	당초 사업진행 장소인 구산동 마을공원 내 물놀이터가 설치되어 축제시 우리동네 에어놀이터로 대체 운영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함
5	우리동네 소화기함	공용소화기함을 봉산산책로와 골목입구 총23곳에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함
6	청소년 동아리 모임활동 지원	사업명이 동아리모임활동 지원이나 동아리 활동보다는 마을탐방 쪽으로만 활동을 하고 마을탐방 후 마을의제 또는 성과등에 관한 결과보고가 없어 아쉬움
7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마을 교육을 끝난 것이 매우 아쉬움

8	거북골 숲 체험장 CCTV 설치	거북골 숲 체험장 주변이 워낙 어둡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 CCTV 설치가 적절했다고 봄. 다만 주변에 꽃나무 등을 심거나식재하거나 플라스틱 바닥재 튀어 오름 등 안전을 위해 앞으로 정비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 됨
9	수국이 있는 수국사	수국이 워낙 예민하고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라 주말마다 주민자치위원과 직원들이 당번을 정해 물을 줘야 하는 수고가 따름.내년부터는 수국사와 협의하여 수국사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5. 총평

사업감사	회계감사
<p>분과별 운영 계획대로 시기에 맞춰 사업을 잘 진행하였기에 무리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소속 분과별 사업에만 집중된 모습이 보여 아쉬움이 있으며 올해 사업에는 분과 구분 없이 모든 사업에 관심을 두고관심을 갖고 참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p> <p>매년 비슷한 취지의 사업을 의제로 상정하기보다는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여 상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p>	<p>지출에 따른 증빙서류가 정확하게 증빙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목적과 상황에 맞게 융통하여 적절히 집행 하였습니다.</p> <p>추진 예정이었으나 현안사항으로 인해 취소된 사업들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p>

은평구청장 귀중

2024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이야기

5. 2024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예산 교부 현황

(단위: 원)

사업구분	항목	세부내역	예산액(원)
합계	총 사업비		16,600,000
주민자치회 운영사업비	소계		4,250,000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470,000
		사무관리비	600,000
		역량강화 및 분과운영	1,905,000
	행사실비지원금	역량강화 및 분과운영	1,275,000
의제개발 및 주민총회	소계		12,350,000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8,710,000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실비지원금	3,640,000



1 | 자치회관운영분과

1동 1대학- 도시농부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텃밭'

운영기간	2024. 4.~11. 매월 1~2회 토요일
장 소	농협대학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81)
대 상	구산동 주민 30명
소요예산	14,000천원



농협대학교 내 텃밭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천





실습 교육 수강 및 직접 재배한 작물을 활용한 친환경 먹거리 만들기 체험 등



6. 2024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2 건강돌봄분과

어르신들의 반찬만들기

운영기간	2024. 4.~ 10.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14:00~16:00(총10회)
장 소	두레생협교육관 2층 (서오릉로 149-20)
대 상	구산동 거주 65세 이상 독거 남성 15명
소요예산	10,000천원



독거 남성들이 스스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 교육 실시





6. 2024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3 환경미래분과

봉산을 들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운영기간 2024.4.13.(토) / 4.20.(토) / 4.27.(토)
10:00 ~ 12:00 ※ 총3차시

장 소 봉산 및 거북골 근린공원 일대

대 상 관내 6~7세, 8~9세 유아 및 어린이 약 60명

소요예산 10,000천원



봉산 및 거북골 근린공원 숲 생태 체험·탐방과 오감놀이





6. 2024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4 미래시민교육분과

청소년 동아리 모임활동 지원

소요예산 6,000천원

벽화 속의 우리동네

운영기간 2024.7. ~ 8. (총 7회차)

장 소 구산동 도서관마을, 구산동 주민센터 인근 주택 등

대 상 관내 청소년 약 20명



관내의 노후된 담벼락 혹은 특색이 필요한 장소에 청소년들이 직접 벽화를 그려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함







마을을 보는 창문 「우리 동네 간판」

운영기간	2024.9. ~ 11. (총 11회차)
장 소	구산동 관내 상가
대 상	관내 청소년 약 20명



관내 영어 간판을 우리말 간판으로 바꾸는 작업을 수행하며 구산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대한 청소년들의 소속감과 애착을 고취시키고자 함





5 시설사업

깨끗하고 안전한 등굣길 마을길

사업기간 2024.4. ~ 5.

위 치 갈현로15길 16~28

소요예산 30,000천원



갈현로 15길은 구산근린공원, 구현초등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보도 노후로 인한 파손, 물고임, 보행자용방호울타리 파손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6 동특화사업

수국이 있는 수국사

사업기간 2024.4. ~ 6.

위 치 구산동 314일대(수국사 일대)

소요예산 20,000천원



수국사지구 일대에 식재한 수국 군락을 인접한 무장애 숲길까지 확장하고 유지 관리를 통해 '수국이 있는 수국사' 테마를 공고히 하고 주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 및 관광객을 유치하여 유서 깊은 수국사의 전통을 널리 알리고자 함



7. 구산동 주민총회 결과보고

- **일** 시 : 2024. 9. 9.(월) 오후 2시
- **장** 소 : 서부재활체육센터 1층 르네상스홀
- **보고사항** : 2023년 감사보고 및 2024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운영현황(활동)보고
- **의결사항** : 2025년 은평구 참여예산 동(洞) 지역사업 결정
- **참여대상** : 2022년 8월 3일 기준 만 16세이상 구산동 주민
- **주민총회 추진경위**

▶ 분과별 마을돌아보기 4회 진행

- 자치회관운영분과 : 2024. 3. 8.(금) 오전11시 서울디지털동행프라자
- 환경미래분과 : 2024. 3.14.(목) 오후 1시 무장애숲길, 우리동네 소화기함 설치장소 등
- 건강돌봄분과 : 2024. 3.15.(금) 오전11시 은평천사원
- 미래시민교육분과 : 2024. 3.23.(토) 오전11시 구산동 도서관마을

▶ 마을의제 주민공론장 2024. 5.10.(금), 7.23.(화) 2회 진행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1차회의 : 7. 29. (월) 18:00

- 주민총회 공고문확인, 주민총회 일정 공유, 진행방법, 역할분담, 홍보 방법 논의 등

▶ 2024. 6. 7.(금) 마을의제 발굴 및 부서검토 제출

- 총 34건 중 21건 제출

▶ 2024. 8.27.(화) 주민총회 상정 의제 확정

▶ 주민총회 홍보

- 6.25.주민총회 슬로건 결정 '함께 만들어 가는 구산동의 내일!'
- 투표 홍보물품 : 마을의제 설명 및 주민자치회 홍보 리플릿 제작, OMR 투표용지 제작, 종량제봉투 10L 홍보 물품 제작 배부 등

▶ 사전투표 진행

- 온라인 및 방문 투표 : 8월 19일 ~ 30일 (12일간)
- 사전투표장소 : 구산동 주민센터, 구산동 마을공원, 은평신협 구산지점, 서부재활체육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4-02호

제4회 구산동 주민총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19조 및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 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 4회 구산동 주민총회를 개최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민총회 개요〉

- 일 시 : 2024년 9월 9일(월) 14:00
- 장 소 : 서부재활체육센터 1층 르네상스홀
- 보고사항 : 2023년 감사보고 및 2024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활동보고
- 의결사항 : 2025년 은평구 참여예산 동(洞) 지역사업 결정

〈자치계획 결정을 위한 투표〉

- 사전투표기간 : 2024. 8. 19.(월) ~ 8. 30.(금) 시행
 - 온라인 사전투표 : 온라인 투표방법 QR코드 또는 링크주소, 참여의 큰술 등
 - 현장 투표 장소 : 구산동 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회실 및 거점 현장투표소 운영
- 투표결과보고 : 당일 현장 발표 및 한 달 이내 은평구청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주민총회 참여 자격〉

- 13세 이상(2011. 9. 9.이전 출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구산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구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 구산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자

〈개회요건〉

-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2024. 7. 31.) 주민등록상 인구 31,243명 중에서 0.5%인 156명 이상의 투표로 개최한다.

〈기타〉

- 위 내용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
- 주민총회 사업 선정 후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조정·결정한다.
- 문의: 구산동 주민자치회 02-351-4132

2024년 8월 1일

구산동 주민자치회장



● 주민총회 마을의제발굴 부서검토 결과

연번	분야	2025년 마을의제	사업내용	검토부서	검토결과
1	시설	봉산 돌레길 입구 에어컨 및 해충카파제 설치	봉산 돌레길 입구(구산그린빌 아파트,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휴먼지 제거용 에어컨 설치	공원 녹지과	부적격
2	시설	예일초등학교 담장 LED벽화등 설치	LED벽화등을 설치하여 길목이 환하게 밝혀줌으로써 음침함을 없애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	도시 계획과	부적격
3	시설	마을버스 정류장 로고젝터 설치	서오릉로17길 임창빌라, 온누리약국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 바닥에 정류장임을 표시하는 로고젝터 설치	도로과	부적격
4	시설	갈현로15길 보도블록 바닥 조명 설치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에 바닥조명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함 도모	도시 계획과	부적격
5	시설	연서로103일대 보도블록 정비	노후보도정비(파손, 물고임, 나무뿌리로 인한 웅기)	도로과	부적격
6	시설	서오릉로21길 구간 보행자 울타리 설치	불법 주차차 방지를 위한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도로과	부적격
7	시설	수국이 있는 수국사	수국사 주변 관광데마 조성을 위한 수국 식재 및 주변 보수(땅패임, 꽃시늬)	공원 녹지과	적격
8	일반	나도 유튜브브 크리에이터	마을 내 청년 대상 영상촬영, 편집 등 유튜브 제작법 교육 운영 및 소모임활동 기회 제공	주민참여 협치과	부적정
9	일반	어린아서예교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서예교실을 배우는 어르신들이 아이들 대상 직접 강의를 진행해보는 서예교실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협치과	부적정
10	일반	시낭송 프로그램	시낭송 기법을 배우고, 가을에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는 주민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협치과	부적정
11	일반	봉산 무장애숲길 걷기대회	완공된 봉산 무장애숲길에 장애인 및 어린이 등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하여 정상까지 산행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걷기대회 개최 및 이벤트 운영	주민참여 협치과	부적정
12	일반	거북마을 플리마켓	관내 마을공원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중고품 등을 매매, 교환하는 이웃 간 교류의 장 마련	주민참여 협치과	적격
13	일반	다함께 빛고 굽고 도예체험	구산동 내 발달장애인 도예 강사를 활용한 주민대상 도예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협치과	적격
14	일반	봄봄 세탁소(이불세탁)	동네 세탁소와 협업을 통한 관내 독거어르신 대상 이불세탁 지원	주민참여 협치과	적격

연번	분야	2025년 마을의제	사업내용	검토부서	검토결과
15	일반	뷰티풀라이프-건강한 삶을 위한 웰에이징 프로그램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신체기능평가 및 운동 상담, 맞춤형 건강요리 실습, 웰다잉 교양강좌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협치과	적격
16	일반	어르신 치매예방 보드게임 프로그램	보드게임을 활용한 어르신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협치과	적격
17	일반	엄마는 요술쟁이	관내 경력단절 가정주부 대상 자질양상 및 자존감 형성 프로그램(페이스페인팅, 아트풍선 강의) 운영 및 관내 행사 시 재능기부	주민참여 협치과	적격
18	일반	전통주 빚기	관내 중·고령자 주민 대상 전통주 빚기 체험 프로그램	주민참여 협치과	적격
19	환경	도전!구산에코골든벨	관내 초등학교 대상 환경상식 문제 및 각종 년센스 퀴즈를 푸는 환경 골든벨 개최	주민참여 협치과	적격
20	환경	숲그린(green)키즈	관내 초등학교 대상 봉산 및 거북골 근린공원 등 숲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협치과	적격
21	특화	구산동네아카이빙-구산 별곡	주민 대상 마을기록단 구성 및 마을취재, 인터뷰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구산동네 마을잡지 만들기	주민참여 협치과	적격

● 홍보물

새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구산동의 내일을 위해 주민들의 소중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구산동 주민총회

2024. 9. 9. (월) 14시
서부재활체육센터 1층 르네상스홀

먼저 들겠습니다!
2024년 제4회 주민총회 사전투표 안내

투표대상 | 13세이상 구산동 거주자 및 생활주민
투표기간 | 2024년 8월 19일(월) ~ 30일(금)

온라인 투표	거점 투표	현장 당일투표
구산동 주민센터1층 구산동 마을공관 구산사거리	2024. 9. 9.(월) 14시 서부재활체육센터1층 르네상스홀	2023년 금새마을 2024년 주민자치회 활동보고 2024년 구산동 마을계획 2025년 구산동 마을잡지 발간

문의 | 02-351-4132, 5154 (구산동 주민센터3층 주민자치회실)

새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구산동의 내일을 위해 주민들의 소중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구산동 주민총회

2024. 9. 9. (월) 14시
서부재활체육센터 1층 르네상스홀

먼저 들겠습니다!
2024년 제4회 주민총회 사전투표 안내

투표대상 | 13세이상 구산동 거주자 및 생활주민
투표기간 | 2024년 8월 19일(월) ~ 30일(금)

온라인 투표	거점 투표	현장 당일투표
구산동 주민센터1층 구산동 마을공관 구산사거리	2024. 9. 9.(월) 14시 서부재활체육센터1층 르네상스홀	2023년 금새마을 2024년 주민자치회 활동보고 2024년 구산동 마을계획 2025년 구산동 마을잡지 발간

문의 | 02-351-4132, 5154 (구산동 주민센터3층 주민자치회실)

새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구산동의 내일을 위해 주민들의 소중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구산동 주민총회

2024. 9. 9. (월) 14시
서부재활체육센터 1층 르네상스홀

먼저 들겠습니다!
2024년 제4회 주민총회 사전투표 안내

투표대상 | 13세이상 구산동 거주자 및 생활주민
투표기간 | 2024년 8월 19일(월) ~ 30일(금)

온라인 투표	거점 투표	현장 당일투표
구산동 주민센터1층 구산동 마을공관 구산사거리	2024. 9. 9.(월) 14시 서부재활체육센터1층 르네상스홀	2023년 금새마을 2024년 주민자치회 활동보고 2024년 구산동 마을계획 2025년 구산동 마을잡지 발간

문의 | 02-351-4132, 5154 (구산동 주민센터3층 주민자치회실)

● 주민총회 방식 및 식순

시간	내용	확인사항
13:45 ~ 14:00('15)	사전안내 및 식전공연 (자치회관프로그램 난타동아리)	· 출연자 대기 및 안내 · 난타 악기 이동 · 공연음악MR송출 · 출연자 공연 후 자리 배정
14:00 ~ 14:05('5)	사회자 인사 및 진행순서,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MR 송출
14:05 ~ 14:10('5)	내빈소개	
14:10 ~ 14:20('10)	내빈 축사 (구청장,구의장,주민자치협의회회장,국회의원,구의원)	· 마이크 전달 및 회수
14:20 ~ 14:22('2)	주민자치회장 인사	· 마이크 전달 및 회수
14:22 ~ 14:25('3)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의사봉 3타 땅땅
14:25 ~ 14:30('5)	기념촬영	
14:30 ~ 14:32('2)	감사보고	· 마이크 전달 및 회수 · 감사보고서 따로 드림
14:32 ~ 14:38('6)	2024년 활동영상	· 영상 송출
14:38 ~ 14:45('7)	2025년 동지역사업 의제 영상	· 영상 송출
14:45 ~ 14:55('10)	마을의제 숙의·토론, 현장투표	· 퍼실11명 토론진행 · 투표용지 집계팀으로 전달 · 집계팀 ppt입력
14:55 ~ 15:05('10)	축하공연(마술사 해리)	· 기업소개 인사 마이크 전달 및 회수 · 공연음악 MR 송출
15:05 ~ 15:10('5)	개표 결과 발표	· 결과발표 ppt입력 화면 띄움
15:10 ~	폐회선언, 경품추첨	· 경품 함, 당첨자 사인명부

● 2025년 자치계획 투표 결과

- 2025년 은평구 참여예산 동(洞)지역사업 7천만원
- 투표대상 : 2024년 7월 31일 기준 13세 이상 구산동 주민
- 투표참여인원 : 총 749명(사전 664명, 현장 85명)

연번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소 계				70,000
1	동특화	구산동네아카이빙 구산별곡	마을역사를 기억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록하기 프로젝트	11,000
2	환경	도전!구산에코골든벨	학생들에게 알리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젝트	10,000
3	환경	숲 그린(green)키즈	숲 생태 관찰 및 오감놀이와 자연환경 지킴	9,000
4	시설	수국이 있는 수국사	수국사 주변 관광테마 조성을 위한 수국 식재 및 주변 보수	20,000
5	프로그램	거북마을플리마켓 (벼룩시장)	지역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이웃 간 교류의 장	3,000
6	프로그램	다함께 빛고 굽고 도예체험	지역사회의 공방을 활용한 발달장애인의 창작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예체험	3,000
7	프로그램	봄봄 세탁소(이불세탁)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겨울 이불 세탁	6,000
8	프로그램	뷰티플라이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웰에이징 프로그램	8,000



총회사진



8. 2024 구산동 주민자치회 활동사진

봉산해맞이행사



밝게 떠오른 2024년의 첫 해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함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회의사진



정기감사



민관협력회의



분과회의



분과회의



운영진회의

운영세척개정위원회



주민총회준비위원회



정기회의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은평구 주민자치회 연합워크숍



마을돌아보기



마을돌아보기



마을돌아보기



주민공론장



수국사 식재행사



자매결연 장연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별첨]

0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0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480호, 2021. 12. 9. 전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등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등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등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등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 2 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4조 (설치)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등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개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위원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제 3 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7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직능·교육·문화·예술·그 밖의 지역단체 추천자 3명 이내
-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선정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②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임기 내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6항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결원의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⑦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 ⑨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천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하는 위원은 임기 중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는 은평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제18조에 해당하는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개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개정)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하지 않은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 및 부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 또는 호선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 또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제안, 선정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자치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보고 및 결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해야 한다.
-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⑥ 자치계획 실행과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업무 추진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 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 6 장 자치회관

제23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다만, 갈현제1동과 응암제1동은 ○○동 문화의집으로 한다.

제24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조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6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운영비와 시상금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해당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의한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 ⑥ 사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3와 같이 한다.
- ⑦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공간 지원 및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 8 장 보칙

제37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8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80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참여예산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참여예산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및 재산 등을 승계한다.

제4조(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협의회로 본다.

제5조(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제23조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2021.1.21. ~ 2.4.	내규수립 의견수렴	자치위원 온라인 설문
2021.2. 5.	내규수립 내용	자치위원 워크숍
2021.2.15.	운영 세칙 초안 정리	운영세칙개정위원회
2021.2.19.	운영 세칙안 논의	운영세칙개정위원회
2021.3. 4.	운영세칙 제정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2022.3.15.	운영세칙 개정안 검토	주민자치회 운영진회의
2022.3.22.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2022.7.26.	운영세칙 부칙 개정안 의결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2024.3.18.	운영 세칙안 논의	운영세칙개정위원회
2024.4. 8.	수정안 공유 및 의견수렴	운영세칙개정위원회
2024.4.23.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2024. 4. 23.



구산동 주민자치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제정 2021. 3. 4.

개정 2022. 3. 22.

개정 2022. 7. 26.

개정 2024. 4.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0조(운영세칙) 규정에 따라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회관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구산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2.“주민자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란 구산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 3.“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 4.“자치계획”이란 지역에 필요한 사업발굴 및 실행, 성과공유의 과정까지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 5.“임원”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선출된 회장·부회장·감사를 말한다.
- 6.“운영진”이란 제5호의 임원·사무국장·간사·분과위원장(또는 분과총무)를 말한다.
- 7.“고문”이란 구산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과 구산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 8.“자치회관”이란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산동 주민자치회”(이하“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구산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운영원칙)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종교적·사적 이용 목적 배제
7. 지역사회 봉사 및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

-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업무(행정사무의 위수탁 계약 체결시에 한한다.)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8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인적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원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위촉하되, 예비자가 없는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 모집 절차에 따라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해촉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연 3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3. 주민자치회 임원과 위원인 사무국장, 간사를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분과 활동에 연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사전 통보 연간 2회 시 예외로 정한다.
 4.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5.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로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6.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7.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고성·욕설 사용 등으로 회의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8. 특정 위원을 사적인 감정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 ② 제①항에 따라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촉 절차와 방법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하되,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한다.
 ③ 제①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단,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 제①항이 규정하는 임원 외의 운영진 구성은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으며, 감사와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사무국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2. 분과별 위원장(또는 총무) 각 1명

제11조(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1인 출마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에 소속된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가 분과장이 된다.
- ③ 사무국장 · 간사는 세칙 제19조, 제20조를 따른다.

제12조(임원 선출관리위원회) ① 임원선출의 선정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임원 선출관리위원회(이하“선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전체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회장 · 부회장 · 감사 선출 입후보자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2.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의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 투표방식 등의 일반적인 선거 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표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3조(회장 · 부회장의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주민자치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감사의 임무) ①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회기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 ② 정기 및 수시 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가 실시한 사업추진 내역
 2. 주민자치회 수입, 예산 지출 내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동내역 전반
- ③ 제2항 2호에 따른 예산 지출 내역의 대상은 주민자치회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과 수익금 · 찬조금 집행 등에 한하며, 동 주민센터 일상경비 교부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시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 시작 30일 전에 자치회장에게 감사 기간을 알리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진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진은 세칙 제23조에 따라 정기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당사자에게는 1회 이상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진회의 또는 정기회의에서 연 3회 무단 불참할 경우(단, 직계존비속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예외)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를 범하였을 때
4.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인 또는 주민자치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5. 주민자치회 운영에 피해를 입히거나 방해 또는 임무 태만 등의 민원발생으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사임) ① 임원 또는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임원은 업무인수인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임한 사람은 사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7조(궐위와 후임선출) ① 자치회장 등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부회장이 신임 자치회장 선출시까지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 한다.
2. 자치회장 또는 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둔다. 단, 후보등록 공고에 3회 이상 지원자가 없을시, 회장의 경우는 부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 할 수 있고, 부회장의 경우는 공석으로 둘 수 있다.
3. 감사와 분과위원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② 궐위된 임원에 대한 신임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궐위로 인해 후임자로 선출된 경우도 이와 같다.

④ 회장과 부회장 모두 궐위시에는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업무 대행 수행자를 결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8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지원
8.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⑥ 사무국장·간사·자원봉사자 등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한 것으로 한다.

제1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실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구 또는 해당 동에서 공개모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심사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1.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3. 주민과 소통하며 구산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③ 사무국장은 활동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 및 운영진과 협의하여 구산동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 처리하며, 업무상황을 종합하여 상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⑤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시에는 공개모집의 선정 절차에 따라 후임을 선출하고 남은 활동기간동안 사무국장직을 수행한다.

제20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은평구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 또는 호선한다.

-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록 작성, 예산회계 출납 등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③ 간사는 활동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하되, 정기·임시회의의 주요내용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 ⑤ 해임 등의 사유로 결퇴시에 자치회장은 간사를 새로 선임 또는 호선하여 남은 활동기간 동안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17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일반 분과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③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원과 사무국장·간사를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필수적으로 1개 이상의 분과에 소속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 ④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한다..
- ⑤ 분과위원회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분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위원 5명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
- ⑥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또는 분과총무)을 선출한다.
-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의 의장이 되며, 분과의 각종 활동 및 분과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분과부위원장(또는 분과총무)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록 작성, 사업계획수립 등 분과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⑧ 주민자치회위원이 아닌 분과원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가입시 가입신청서를, 탈퇴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회의, 사업 활동 등에 연 5회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⑨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한다.
- ⑩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별 사업 실행뿐만 아니라 구산동 전체 주민자치사업을 함께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⑪ 분과위원회는 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실행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
2. 운영회의
3. 민관협력회의
4. 분과회의
5. 주민총회
- ② 자치회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장(또는 간사) 제1항의 1호부터 3호까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며, 각 분과는 제4호의 회의 종료 후 분과장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3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 제①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세칙 및 세칙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총회 개최 및 의제 확정 등 관련된 사항
 4. 주민자치회 사업c결산 및 감사 보고의 승인
 5. 위원의 위·해촉 요구 및 운영진의 선출·해임
 6.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8. 운영진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9.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10.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본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④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
- ⑤ 임시회의는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운영세칙 제2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4조(운영진회의)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운영진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간사로 구성한다. 단 분과위원장 유고 시, 분과부위원장(분과총무)이 출석할 수 있다.
- ④ 운영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제25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 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장,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수시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분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 ③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간사, 사무국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분과위원의 의무는 갖지 않는다.

제27조(주민공론장 및 성과공유회) ① 주민자치회는 의제 발굴 및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론장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론장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자치회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③ 성과공유회는 매년 12월 정기회의와 함께 당해 년의 주민자치회 사업 정리 및 평가, 차년도 사업안내도 포함하여 진행한다.

제28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13세 이상의 주민(구산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0.5%(서면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 이상으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1개월 전부터 홍보, 설명회, 사전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⑤ 효율적인 주민총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⑥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 및 구성 인원, 업무분장, 역할, 운영기간 등을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운영한다.

- ⑦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단, 온라인 주민총회 시 온라인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⑨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 ⑩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⑪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9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자치계획 수립) ①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회의에 보고한다.

- ② 운영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예산 및 문서관리

제31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 기탁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예산
 3.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4.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 ② 주민자치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반드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보험료는 주민자치회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33조(회계 및 지출) ① 제33조(재정)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예산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이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 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제33조(재정)에 규정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 보고 한다.

제35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이 사무국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사무국은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사무의 인계) ① 임원, 자치위원 및 사무국장, 간사의 임기 만료, 사임 및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의 진행사항과 관련 기록물을 정리하고 인수인계서와 함께 후임자 또는 해당 업무 대행자에게 인계하고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추진중인 업무가 없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등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 ③ 인수인계 시점은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사임·해임 또는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38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주민자치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직인)
 3. 문서접수 및 발급 대장
 4. 문서등록 대장
 5. 각종 회계장부
 6.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부 칙 (2024. 4. 23.)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승인받은 날 2024. 4. 23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운영세칙을 개정한다.

제4조(회비) ① 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정하되, 납부계좌로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 회비를 집행할 수 있다.

1. 민관협력 행사 (마을 축제, 체육대회, 자매 결연지 방문, 적십자 성금,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장학금 지급 등) 시 단체 경비로 지급한다.
2. 애경사에는 현금 100,000원 (또는 상당의 화환)을 지급 한다. 단, 위원 2년 임기 중 1번을 원칙으로 하며 직계가족 (부모,자녀)및 배우자에 한함. (※ 부모에는 배우자의 부모 포함)
3. 경상비로 처리할 수 없는 사업비 (착불을 포함한 택배비, 세탁비, 수수료 등) 현금성 경비
4. 정기회의 식비(1인 8,000원) 및 분과회의 식비(1인 8,000원) 초과분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단, 초과분은 50% (1인 4,000원)로 제한하며 분과회의는 사업계획서에 맞춰 횟수 제한을 둔다.

③ 신규 위원은 위촉된 달로부터 회비를 납입하며, 회비 납입 위원은 기존 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재정 등은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경미한 지출 및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은 선 결제 후 주민자치회에 보고한다.

⑥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 (기부, 후원, 자치위원에 대한답례품 등)

⑦ 회비는 매월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며 매년 12월 별도의 감사를 거쳐 보고한다.

함께 만들어가는 구산동의 내일!

2024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구산동 주민자치회